

세금/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약관

제 1 조 목적

본 약관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이하 "은행")이 제공하는 세금/공과금 납부 서비스(이하 "본 서비스")에 적용된다.

제 2 조 납부신청 및 납부

- 1) 본 서비스는 은행을 주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된다.
- 2)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, 은행과 협의 후 별도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세금/공과금의 납부신청 및 납부는 은행의 영업일에 한한다.
- 4)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/공과금이 있을 경우, 고객은 정확한 금액과 건수, 희망 납부일을 기재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납부신청 마감시간 이전에 지정된 이메일로 신청한다. 단 희망 납부일은 2 조 8 항에서 명시한 납부신청이 사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. 납부신청이 희망 납부일 전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, 실제 납부일과 희망 납부일은 차이가 날 수 있다.
- 5)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/공과금이 있을 경우, 고객은 전자금융채널(HSBCnet, HSBC Connect, 또는 SWIFTnet)을 통하여, 납부 신청 마감시간 이내에, 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6) 이체 지시서를 팩스를 통하여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팩스, 우편, 인편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에 관한 면책약정서(기업용)"가 사전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. 고객은 지정된 은행 양식을 사용하여, 출금계좌번호, 납부 일, 총납부고지서의 수 및 총 납부금액을 명기하여야 하고, 당해 출금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 사전에 등록한 서명 내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
- 7) 고객은 우편(등기우편, 퀵서비스 및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한 서비스) 등을 이용하여 납부 고지서 원본(용지)을 은행에 송부하여, 은행이 이를 납부신청 마감시간 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은행이 본인의 세금/공과금 납부업무를 의뢰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사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인받은 납부 고지서에 한해 본인은 납부고지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FAX 또는 E-Mail로 은행에 송부할 수 있다.
- 8) 위 4) 5) 7) 항을 모두 완료시, 납부신청이 완료된다.
- 9) 은행은 은행의 이메일주소 및 납부계좌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제 3 조 은행의 납부 처리 시한 및 납부 영수증 반환

- 1) 은행은 제 2 조에 따른 고객의 세금/공과금 납부 서비스 신청 거래에 대하여 희망 납부일에 처리한다. 단, 제 2 조 4 항에 따라 희망 납부일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신청일 익영업일에 약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 처리한다.
- 2) 은행은 등기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일에 납부 영수증을 본인에게 발송한다. 단, 은행의 우편 발송 업무량 증가로 인해 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납부일 익영업일에 납부 영수증이 발송될 수 있다.

이 약관은 "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"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

제 4 조 제 3 자 이용

은행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이나 제 3 자를 이용할 수 있다. 은행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이나 제 3 자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대리인 또는 제 3 자의 선정 및 관리 감독에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5 조 수수료

서비스 이용 표준 수수료는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며, 표준 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 개월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달간 거래처에 알린다. 표준 수수료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일 1 개월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(E-mail)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한다. 고객은 수수료 변경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- 1) 은행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익월 10 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고객이 세금/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명시한 출금계좌번호에서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출금한다.
- 2) 은행의 글로벌빌링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, 글로벌빌링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인출 일정을 따른다

제 6 조 면책

은행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면책된다.

- 1)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
- 2)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
- 3)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사항
- 4) 고객이 이체한 금액, 납부고지서 기재금액, 은행이 실제로 확인한 납부금액이 상이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

제 7 조 오류 또는 예외상황 발생시 처리

- 1) 은행은 고객이 이체지시서에 기재한 금액,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, 은행이 실제로 확인한 납부금액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, 이를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고, 본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.
- 2) 제 1 항의 경우 은행은 고객이 이체한 금액내에서 납부만기일을 고려하여 납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한도 내에서 우선 처리한다

제 8 조 약관의 변경

이 약관은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

- 1) 동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,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- 2)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(E-mail)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개별 통지한다.
- 3)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한 경우,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일까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 단, 본 조 제 2 항에 따라 거래처에 개별 통지할 때 본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.

제 9 조 관할법원

이 신청서와 관련하여 은행과 본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0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

동 약관의 내용 중 전자 금융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